2. 주요내용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신설·보완(안 별표)
- 현재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용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4차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 1) 전자우편(이메일) : songhjoo@korea.kr
-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존정책과
 - 3) 팩스: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8, 1519)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94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제정이유,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정안(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1.1.1., 법률 제17103호, '20.3.24. 개정)으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 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3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시행령 개정안(심사중) 별표 1의2, 사안에 따라 5~30만원)하되, 1인당 지급한도는 3백만원으로 제한

보

나.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4조)

신고 서식에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등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 단, 부정 신고, 관련 직무자 등은 제외

다. 포상금 지급방법(안 제5조)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 후 지급. 단,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는 확정 전 지급 가능 등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0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ample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주)캐어콘(이진용) ②(주)부루빌(장수경)

③동부엔지니어링(주)(홍문기)

④(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유태원) ⑤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차윤호)

- 나. 전화번호 : ①02-477-6849 ②031-261-3920 ③02-2122-6795 ④02-6333-3249 ⑤031-740-2614
-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2호
- 3. 명칭 :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서 기존 섬유시트에 비해서 인장강도 및 연성율이 월등히 우수하며 경제성이 높은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개발하고, 유사연성 섬유시트에 에폭시